

제 1155 호
1985. 8. 8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영문관
편집인 : 공보관 이광우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시보

차례

◎ 조 례

제 2015 호 : 서울특별시동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3

제 2016 호 : 서울특별시동명칭 및 구역확정조례중 개정조례 18

제 2017 호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 21

제 2018 호 :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22

◎ 고 시

제 534 호 :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지적승인고시 28

< 이 면 계 속 >

시 보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447

제 535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29
제 536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30

◎ 공 고

제 461 호 : 도시계획시설 (신설 및 변경)	30
제 462 호 : 비료생산품목추가허가사항공고	32
제 463 호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32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동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8.8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서울특별시조례제 2015 호

서울특별시 동사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중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9.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 방 공 무 원 정 원 표

동사무소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5	급	453	행정직 30, 별정직 423
6	급	453	행정직 453
7	급	491	행정직 491
8	급	2,891	행정직 2,883 농림직 8
9	급	4,404	행정직 4,005 농림직 17 토목직 382
고	용 원	550	조사원 97 사환 453
합	계	9,242	

(별표 2)

구	현 행 (조정전)			조 정 후		
	동사무소명칭	법 정 동 관 할	일 부지 역 관 할	동사무소명칭	법 정 동 관 할	일 부지 역 관 할
중	명문3가동	명문3가동	와봉동상 와봉동 1번지	명문3가동	명문3가동	
로	가동	동		가동		
구	중로1, 2가동	청진동 서린동	와봉동중와봉동 1번지를 제외한 지역	중로1, 2가동	와봉동 청진동	

구 명	현 행 (조정전)		조 정 후		
	동사무 소명칭	법 정 동 관 할	동사무 소명칭	법 정 동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수송동 중학동 공명동 관훈동 견지동 운니동 익선동 경운동 관철동 인사동 낙원동 종로1가 종로2가		서린동 수송동 중학동 공명동 관훈동 견지동 운니동 익선동 경운동 관철동 인사동 낙원동 종로1가 종로2가	
중 구	울지로3 4,5가동	울지로3가 " 4가 " 5가 주교동 방산동 입정동 산림동 초동 인현동1가 저동2가 오장동	울지로3 4,5가동	울지로3가 " 4가 " 5가 주교동 방산동 입정동 산림동 초동 인현동1가 저동2가	
	충무로4 5가동	충무로4가 " 5가 인현동2가	충무로4 5가동	충무로4가 " 5가 인현동2가	

구 형	현 행 (조정전)		조 정 후	
	동사무 소명칭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동사무 소명칭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예관동		예관동 오강동
명 동	저동1가 충무로1가 * 2가 명동1가 * 2가 남산동1가 * 2가		명 동 저동1가 충무로1가 * 2가 명동1가 * 2가 남산동1가 * 2가	예강동8번지의 6, 10-18, 21, 22, 37-39, 49-60, 66-92, 96, -102, 104, 107-141, 144, 150, 151, 156, 170-177
필 동	필동1가 * 2가 * 3가 주자동 남학동 예강동 충무로3가		필 동 필동1가 * 2가 * 3가 주자동 남학동 충무로3가	예강동중 명동강 관할을 제외한 전역 강충동2가중 192의 11-18, 21-22, 26-39, 44-45, 51-52 56-73, 76, 79, 81, 83, 87-89 95-121, 125, 130 강충동2가산 14의 2, 12, 21, 43, 44, 51
강충동	강충1가 2가 목정동		강충동 강충동1가 목정동	강충동2가중 필동강 관할 구역을 제외한 선지역
용 산 구	후암동 도동2가		후암동 후암동	
	남영동 갈월동 동자동 남영동 용산동1가 도동1가		남영동 갈월동 동자동 남영동 용산동1가	
성 동 구	성수2가 2동	성수동2가중 동2로 이동 지역	성수2 가2동	동이로와 구의로, 자양 동과의 경계와 236-26 에서 216-12 에 이르 는 북섬길로 포위된 지역

구 명	현 행 (조정전)			조 정 후		
	동사무 소명칭	법 정 동 관 할		동사무 소명칭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성수2가 4동		동이로와 236-26에서 216-12에 이르는 쪽설 길과 자양동 및 강동구와 경계로 포위된 지역
성 동 구	성수1 가동	성수동 1가		성수1가 1동		성수교의 강동구계 지점 을 기점으로 성수1가 685-143, 659-9, 656-953에 연결되고 656-396에서 구 의로 접선지점 (X=449450 Y=204050)과 성수1가22- 5에 이르는 지점의 이남지역
				성수1가 2동		성수동1가중 성수1가1동 장이 관할하는 지역을 제외 한 전지역
	자양1동		자양동중 자양동로타리에서 잠실대교 35m도로를 따라 남 진하다가 79브릭 136번지에 서 좌측에 이르는 20m도로 를 따라 11브릭 243번지를 경유 553-14호(성수동2가 경계)에 이르는 도로서북지역	자양1동		자양동 226-28에서 228-14 에 이르는 25m도로(구의 로)를 연하여 228-14에서 690-9에 이르는 25m도로 (X=448431 Y=206750) 와 자양2동 경계의 이북지 역
	자양2동		자양동중 자양1동장 관할구 역을 제외한 전역	자양2동		자양동 228-14를 기점으로 자양동 581-1을 경유하여 강동구와의 경계지점에 연하는 이동지역으로 자양1동의 이 남지역
				자양3동		자양동중 자양제 1, 제 2동 장 관할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하왕십리 제 1동	상왕십리 동	하왕십리동중 292번지 2에서 상왕십리동을 경계로 872번 지 및 940번지를 연하는 도 선동, 홍익동과의 경계 서북 지역		왕십리제 1동	상왕십 리동	하왕십리동중 292번지 2에서 상왕십리동을 경계로 872번 지 및 940번지를 연하는 도선동, 홍익동과의 경계 서 북지역

구 명	현 행 (조정전)			조 정 후		
	동사무 소명칭	전지역 관할	법 정 등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동사무 소명칭	전지역 관할	법 정 등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상 동 구 제2동	하왕 십리		하왕십리동중 하왕십리 제 1 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왕십 리제 2동	
동 대 문 구 제3 동	장안		장안동중 173브락을 기점으로 하여 30 m 도로를 경계로 한 7 브락에 이르는 이서 지역 및 면목동중 중량천 이서지역으로서 휘경제 2 동장과 장안제 2 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지역	장안 제 1 동		장안동중 장안로 (30 m) 를 경계로 천호대로에 이르는 이서지역중 장안동 141 의 29 (장수로변) 에서 장안동 369 의 1 에 이르는 15 m 도로를 경계로한 이남지역
				장안 제 4 동		장안동중 장안로 (340 m) 를 경계로 천호대로에 이르는 이서지역중 장안제 1 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지역과 면목동중 중량천 이서지역으로서 휘경 제 2 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지역
장안 제 2 동	장안		장안동중 장안제 1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및 면목동중 중량천 이서지역으로서 1049 의 739 들기점으로 1049 의 690 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경계로한 이남지역	장안 제 2 동		장안동중 장안로 (30 m) 를 경계로 천호대로에 이르는 이서지역중 장안시영 아파트 1, 2 단지 경계도로 이북지역과 장안동 335 의 6 에서 장안동 90 브락 칠담 경계도로와 장안로 (30 m) 에 접하는 이서지역
				장안 제 3 동	-	장안동중 장안로 (30 m) 를 경계로 천호대로에 이

구 명	현 행 (조정전)			조 정 후		
	동사무 소명칭	법 정 동 관 할		동사무 소명칭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전지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도 봉 구	상 계 제2동		상계동중 855번지의 8에 서 산 128번지에 이르는 구 거 이남지역과 산 133번지, 산 135번지, 산 143번지, 산 144번지 이남지역중 127 번지와 산 186번지앞 당현 천 서남측 지역			르는 이동지역중 장안 제 2동을 제외한 지역
				상 계 제5동	상계동중 855-8에서 산 128번지에 이르는 구거 이남지역과 산 133번지, 산 135번지, 산 143번지, 산 144번지 이남지역과 산 155-84에서 산 155-88, 156-130에 이르는 도로 이남지역과 173번지를 포 함한 동번지 전면 당현천 서남지역과 상계 2동 경계 북측지역	
은 불 광 명 구	불 광 제2동		불광동중 불광 제1동장 관 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불 광 제2동		불광동산 19-1를 기점으로 308을 연결하는 연서로(25m) 와 통일로를 경계로한 이동 지역중 불광 제1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진관외동과 접하는 지역

구 명	현 행 (조정전)			조 정 후		
	동사무 소명칭	전지역 관할	법 정 동 관 할 일부지역 관할	동사무 소명칭	전지역 관할	법 정 동 관 할 일부지역 관할
	역촌 동	역촌동		불 광 제3동		불광동중 연서로 (25 m) 와 통일로를 경계로한 이 북지역으로서 진판외동과 접하는 지역
				역 촌 제1동		역촌동중 연서로를 경계로 하여 5-1블 기점으로로서 오름로를 따라 진흥로와 접하는 지역으로서 연서로 의 이동지역
				역 촌 제2동		역촌동중 역촌동 제1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지역
강 서 구	등촌 동	등촌동		등 촌 제1동		등촌동중 648 의 9 블 기점 으로하여 공항로를 따라 215 브리 664 의 18 을 중 점으로한 이북지역중 77 의 16 을 기점으로 양천 길을 따라 10 의 8 을 중 점으로한 이북지역을 제외 한 지역
				등 촌 제2동		등촌동중 483 의 1,51 을 기 점으로 공항로를 따라 534-11 을 중점으로한 이 남지역중 산 48 의 3 의 지 적선을 따라 산 47 의 6, 36 의 195,93,147, 산 26 의 11, 산 25 의 9, 산 25 의 3, 산 24 의 2 를 연하는 이동지역

현행 (조정전)			조정 후		
구	동사무소명칭	전지역관할	동사무소명칭	전지역관할	법정동관할
		일부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목계 3동	목동중목 계 1, 2 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지역	목3동	목동중 361의 2를 기점으로 361의 56, 361의 143, 701-34, 35, 17 연하여 등촌로를 건너 731-12을 기점으로한 6m 도로를 경계로 734의 14, 735, 736의 18을 연하여 747의 11을 중점으로한 이북지역중 목계 2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목4동	목동 782-1을 기점으로 등촌로를 따라 807의 18을 종점으로한 경인고속도로 북측지역중 목계 1, 2, 3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화곡 제5동	화곡동중 김포구획정리지구 315브럭 기점으로 374브럭 145의 1에 연하는 도로 경계(강서로) 이동지역중 374브럭 145-1를 기점으로 165브럭에 연하는 도로경계(화곡로) 서북지역	화곡 제5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촌동 42의 15를 기점으로 공항로를 연하여 606의 1, 2, 603의 1, 2, 3을 연하여 화곡로를 따라 553의 9를 중점으로한 공항로 이남지역과 화곡로 이서지역 ○ 화곡동중 1003번지를 기점으로 (화곡제 2 아파트) 1064의 3에 연하는 도로경계(강서로) 이동지역중 1064의 3을 기점으로 996-1에 연하는 도로경계(화곡로) 서북지역 	

구 명	현 행 (조정전)			조 정 후		
	동사무 소명칭	전지역 관할	법 정 동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동사무 소명칭	전지역 관할	법 정 동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화곡 본동		화곡동중 화곡제 1,2,3,4, 5 등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화곡 본동		등촌동중 534 의 10 을 기점 으로 공항로를 따라 537 -1 이남지역 과 340-1 을 연하여 화곡로를 경계로한 552-14 이동지역중 534 의 10 지적선을 따라 산 50 의 6, 산 57 의 1, 산 59 의 1, 2, 산 60, 203 의 15, 203-20, 산 61-1, 이서지역 화곡동 화곡제 1, 2, 3, 4, 5 등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신월 제1동		신월동중 591-6 나들 기점으 로 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한 이북지역중 남부순환도로 이 동지역	신월 1 동		신월동중 90-1 기점으로 하 여 가로공원을 따라 146-1 중점으로한 이남지역과 남 부순환도로 이동지역중 경 인고속도로를 경계로한 이 북지역	
			신월 5 동		신월동중 50 의 5 를 기점으 로 하여 가로공원을 따라 88 -31 을 중점으로한 이북지 역중 남부순환도로 이동지역	
신월 4 동		신월동중 412-7 를 기점으로 504 의 24 를 연결하는 12 미터 도로와 601 의 6 번지 와 591 의 2 를 연결하는 8 -6 미터 도로를 경계로한 남 서지역중 신월동 412-7 을 기점으로 경인고속도로를 경 계로한 이남지역	신월 4 동		신월동중 412 의 7 를 기점으 로 504 의 24 를 연결하는 12 미터 도로를 경계로한 남서지역중 412 의 7 을 기 점으로 경인고속도로를 따 라 331 의 4 를 중점으로 한 이남지역중 신월로를 경 계로한 이북지역	
			신월 6 동		신월동중 601 의 6 을 기점으 로 595 의 1 을 연하여 591 의 2 로 연결하는 8-	

구 명	현 행 (조정전)			조 정 후		
	동사무 소명칭	전지역 관할	법 정 동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동사무 소명칭	전지역 관할	법 정 동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가양 동	가양 동, 마곡 동			가양 동	가양 동	등촌동중 77의 16을 기점으로 양천길을 따라 10의 8을 중점으로한 이북지역과 내발산동중 228브럭 639의 6을 기점으로 하여 공항로를 따라 289의 2를 중점으로한 이북지역 마곡동중 399를 기점으로 하여 지적선을 따라 397의 2, 317의 3 400의 2, 400의 1, 401, 402의 3 403의 3을 중점으로 하는 이북지역
발산 동	내발 산동 외발 산동			발산 동		내발산동중 117의 3을 기점으로하여 공항로 따라 380의 8을 중점으로한 이남지역 외발산동중 355-1을 기점으로 10미터 도로를 따라 남부순환도로를 건너 52-8을 중점으로한 동남지역
신정 제4동		신정동중 신정제 1, 2, 3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신정 제4동		신정동중 943의 1을 기점으로 하여 오복교를 따라 994의 2를 중점으로한 이남지역과 972의 5를 기점으로한 신정로를 따라 등촌로와 교차지점을 중점으로한 이북지역

구 명	현 행 (조정전)		조 정 후	
	동사 구명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 관 할	동사 구명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 관 할
구 로		일 부 지 역 관 할	신정제 5동	신정동중 898의 16을 기점으로한 경인고속도로 이남지역중 등촌로와 오목교를 교차지점을 중점으로한 오목교이북, 동향로 이남지역
구	독산제3동	독산동중 경수국도 이동지역으로서 시흥토지구획정리지구 80브럭 280의 10을 기점으로 87브럭 1,91브럭 산89의 4로 이어지는 도로와 산89의 4의 지적능선이북지역	독산제3동	독산동중 독산동길 이동지역으로 독산동977의 24를 기점으로 976의 23, 산89의 7로 이어지는 도로와 산89의 7, 11, 산10의 3, 1, 산89의 3, 산9번지 경계로한 이북지역
	독산제4동	독산동중 독산제1, 2, 3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지역	독산제4동 독산본동	독산동중 독산제1, 2, 3본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지역 독산동중 시흥대로와 독산동길간의 지역으로 독산동159의 24를 기점으로 178의 7까지 이어지는 20미터 도로의 이북지역
	시흥제2동	시흥동중 산112를 기점으로 산116, 산115, 824의 65, 4, 825, 826, 827, 831, 836, 830, 251, 271, 산84, 산91, 산93, 에 이르는 이동지역	시흥제2동	시흥동중 산108의 1, 2, 231, 230, 237, 240, 241, 243, 244의 46, 47, 48, 49, 50, 263의 1, 16, 24, 25, 262의 7, 270, 산84, 산91, 산93번지 경계선으로 한 이동지역
	시흥제3동	시흥동중 시흥제1, 2, 4본동장 관할지구역을 제외한전지역	시흥제3동 시흥제5동	시흥동중 시흥제1, 2, 4, 5본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전지역 시흥동중 산113를 기점으로 산116, 산115, 824의 65, 4, 825, 826, 827, 831, 836, 908, 922, 932, 935, 936, 436, 산71, 산73번지의 경계로 한 이동지역중 시흥2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지역

구	현 행 (조정전)			조 정 후		
	동사무	법 정 동 관 할		동사무	법 정 동 관 할	
	명 소 명 칭	전 지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명 소 명 칭	전 지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관	봉천제 7동		봉천동중 산181의 16을 기점으로 봉천동 4거리를 경유 남현동 경계선에 이르는 관악로 및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한 동남지역	봉천제 7동		봉천동 산181의 16을 기점으로 관악로를 따라 봉천동 4거리를 경유 남부순환도로 이남지역으로 1660의5와 207의21을 잇는 10미터도로를 지나 215, 218 1510 지적선과 산 48의1, 산 35의1, 산32, 산15, 산33, 산4의1, 산11, 산4의8, 산9의3, 산4의7지적선 이서 지역 및 남으로 안양시계 지역
				봉천제 11동		봉천동중 봉천본동과 봉천제 1, 2, 3, 4, 5, 6, 7, 8, 9, 10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
강	삼성동		삼성동, 청담동 중학로, 남 3로 베헤란로 및 탄천중심선으로 포위된 지역	삼성 1동		삼성동중 삼성로이동, 학동로이남, 베헤란로 이북, 탄천중심선이 서로 포위된 지역
				삼성 2동		삼성동중 삼성 1동장 관할 지역을 제외한 지역
	대치 2동		대치동, 삼성동중 베헤란로 이남지역으로서 남4로 이서지역 및 탄천중심선 이 동지역을 제외한 지역	대치 2동		대치동중 삼성로 이동지역 삼로 이남지역 영동대로 이서지역 및 양재천 중심선 이북으로 포위된 지역
				대치 3동		대치동중 대치 1동, 대치 2동장 관할지역을 제외한 지역
개포 2동		개포동중 개포 1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지역	개포 2동		개포동중 개포 1동, 개포 3동장이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개포 3동		개포동중 삼성로 이동지역 과 개포 3단지 로타리에서	

구 명	현 행 (조 정 전)			조 성 후		
	동사무 소명칭	전지역 관 할	법 정 동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동사무 소명칭	전지역 관 할	법 정 동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방배2 동		방배동중 산 25 를 기 점으 로 하여 279 의 2 호에 이 르는 도로 (지하철구간) 와 279 에서 산 46 의 1, 301 의 1 을 경유 산 65 의 1 로 이어지는 등선 (도시계획상 도로와 사당로를 경계로한 이남지역	방배2 동		방배 3007 에서 방배 944-27 에 이르는 도로 이남지역 과 방배 944-27 에서 방배 50-1 에 이르는 15 미터 도로 이서지역 및 방배 50-1 에서 방배 479-16 (지하 철 2 호선) 및 방배산 102-8 에서 방배산 99 및 방배산 142 에 이르는 등선과 동 작대로 이동지역 및 경기 도과천 경계선 이북지역으 로 포위한 지역	
신사동		신사동, 압구정동중 한강 강 남대로, 도산로, 남 1 로 (882 브럭 18 의 2 를 기점으로 755 브럭 315 의 1 로 연결되는 도로) 및 755 브럭 315 의 1 에 서 57 브럭 336 으로 이어지 는 소도로 및 57 브럭 336 에서 한강중심선으로 연결되 는 직선계 포위한 지역	방배3 동		방배동중 방배 1 동 방배 2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신사동		신사동, 압구정동중 한강 강 남대로, 도산대로, 논현로, 한강중심선 이남지역으로 포 위된 지역	

구 명	현 행 (조정전)		조 정 후	
	동사무소명칭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 관 할	동사무소명칭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강 남 구	압 구 정 동	압구정동, 신사동, 학동중도산로 남3로 한강, 남1로 (882브럭 18의 2를 기점으로 755브럭 315의 1로 연결되는 도로)와 755브럭 315의 1에서 57브럭 336으로 이어지는 소도로 및 57브럭 336에서 한강중심선으로 연결되는 직선에 포위된 지역	압 구 정 동	압구정동, 신사동중 논현로도산대로, 선릉로, 한강중심선 이남 지역으로 포위된 지역
강 동 구	하일동 상일동		하일동	하일동, 상일동중 고덕천옆 고덕구획정리지구내 도로(10-25m)를 경계로 하는 이동부 지역
			상일동	하일동, 상일동중 하일동장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고덕구획정리지구내 도로, 이서지역)
	명일동 고덕동		명일동 고덕동	
천 호 제2동		천호동중 천호동 413번지를 기점으로 동402번지를 경유하여 동3번지에 이르는 도로의 서북지역과, 성내동중 성내동 53의 3호 동52의 2호 동71번지 1호를 연결하는 도로 북서쪽을 포함한 지역 및 암사동중 암사동 536번지 동 539번지 3호 동 522번지 6호에 이르는 도로의 동남쪽을 포함한 지역	천 호 제2동	천호동중 선사로 이서지역과 구천면길(15m)이남지역과 성내동 53번지의 3호 52의 2동 71번지의 14호를 연결하는 도로 북서쪽을 포함한 지역 및 풍납동중 천호대로(25-50m)를 경계로 하는 이북지역
			천 호 제4동	천호동중 천호 1, 2, 3동장이 관할하는 구역을 제외한 지역(선사로와 구천면길로 포위된 지역)

구 명	현행 (조정전)		조정후	
	동사무소명칭	법정동관할	동사무소명칭	법정동관할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성내제1동		성내동중 성내 2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과 둔촌동중 503번지 동 547번지 동 431번지에 이르는 50도로의 서북지역	성내제1동	성내동 416번지를 기점으로 동 108번지의 2호에 이르는 15m도로 이남지역과 풍남로, 강동대로, 둔촌로를 포위된 지역 및 성내 2동장 관할구역중 성내동 해바라기아파트 11-15동을 포함한 지역
성내제2동		성내동중 성내동 441번지 길동 438번지 성내동 72번지 3호 동 99번지 2호에 이르는 도로로 포위된 지역	성내제2동	천호대로, 둔촌로, 강동대로 풍남로로 포위된 지역중 성내제1동장이 관할하는 구역을 제외한 지역
풍남동	풍남동		풍남제1동	풍남동중 천호대로와 풍남로 풍남로변 (영파여고뒤) 10m도로로 포위된 지역
			풍남제2동	풍남동중 풍남제1동장, 천호 2동장이 관할하는 구역을 제외한 지역 (성내천, 풍남로, 풍남로변 10m도로로 포위된 지역)
길제2동		길동중 길제 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길제2동	길 2동중 길동 산 16번지의 2호를 기점으로 길동 산 308번지의 4호에 이르는 천호대로 (50m)이동남 지역을 제외한 지역
둔촌동		둔촌동 530번지 동 539번지 동 431번지와 길동 437번지 동 산 62번지에 이르는 50도로 동남쪽 지역	둔촌제1동	둔촌아파트 북쪽펜스 이남 지역과 거여동길 이서지역
			둔촌제2동	천호대로와 둔촌로, 강동대로로 포위된 지역중 둔촌제1동장이 관할하는 구역을 제외한 지역

구 명	현 행 (조정전)			조 정 후		
	동사무 소명칭	법 정 동 관 할		동사무 소명칭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전지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강 동 구	방이동	방이동		방이동	방이동	
		이 동				
		오금동			오금동 오금동	
	송파동	송파동		송파동	송파동	
		삼전동 석촌동		석촌동	삼전동 석촌동	
	문정동 잠시동	가락동중 가락구획정리지구 404 번지의 49 호를 기점으로 309 번지에 이르는 송파대 로 이동북지역	문정동 문정동 잠지동	가락동중 가락동장이 관 할하는 구역을 제외한 지역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 8. 8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㉔

◎서울특별시조례제 2016 호

서울특별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정연혁표 2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9.1부터 시행한다.

(개정연혁표 22)

1. 종로구 와룡동 1의1에서 1의 1131, 2의 40, 42, 61, 65, 산2의 4, 8, 산3의 3, 5, 8, 15, 18을 명문 3가동에 편입한다.
2. 용산구 도동1가를 용산구 동자동에 편입하고, 용산구 도동2가를 용산구 후암동에 편입한다.
3. 동대문구 장안동중 장수로 이서 천호대로 이북지역을 답십리동에 편입한다.
4. 성북구 장위동중 화랑로에 의거 분할되는 지역을 성북구 석관동에 편입한다.

- | | |
|---|---|
| <p>5. 마포구 용강동중 7-1, 7-2, 7-3, 7-4, 7-10, 7-13을 마포구 염리동에 편입한다.</p> <p>6. 강서구 등촌동중 등촌동 77의 16을 기점으로 양천길을 따라 등촌동 10의 8을 중점으로 한 이북지역을 가양동에 편입한다.</p> <p>7. 강서구 등촌동중 등촌동 603의 1을 기점으로 공항로를 연하여 606의 12, 603의 1, 2, C 및 화곡로를 따라 553의 9를 중점으로 한 화곡동과의 경계지점까지의 공항로 이남지역과 화곡로 이서지역을 화곡동에 편입한다.</p> <p>8. 강서구 등촌동중 등촌동 534의 10을 기점으로 공항로를 따라 등촌동 537-11 이남지역과 등촌동 540의 1을 연하여 화곡로를 경계로 한 등촌동 552의 14 이동지역 중 등촌동 534의 10 지적선을 따라 산 50의 6, 산 57의 1, 산 59의 12, 산 60, 203의 15, 203의 20, 산 61의 1, 이서지역을 화곡동에 편입한다.</p> <p>9. 강서구 마곡동중 마곡동 399번지를 기점으로하여 지적선을 따라 마곡동 397의 2, 3117의 3, 400의 1, 401, 402의 3, 403의 3을 중점으로 하는 이북지역을 가양동에 편입한다.</p> <p>10. 강서구 마곡동중 마곡동 399의 34를 기점으로 하여 399의 41,</p> | <p>42, 44, 45, 15, 404의 4, 5, 43, 2, 1, 399의 5, 27, 24, 404의 30, 405, 9 이서지역을 공항동에 편입한다.</p> <p>11. 강서구 내발산동중 288부러 639의 6을 기점으로하여 공항로를 따라 289의 2를 중점으로한 이북지역을 가양동으로 편입한다.</p> <p>12. 강서구 외발산동중 354의 3을 기점으로 하여 10미터 도로를 따라 남부순환도로를 건너 외발산동 52의 2를 중점으로한 서북지역을 공항동에 편입한다.</p> <p>13. 영등포구 당산동 1가내 영등포동으로 표기되어 있는 185의 1호의 375 필지를 당산동 1가로, 영등포구 당산동 2가내 영등포동으로 표기되어 있는 254의 10호의 4 필지를 당산동 2가로 변경한다.</p> <p>14. 영등포구 신길동 220의 37호를 기점으로 221의 9호(잔)를 연하는 신길로(25m) 중심선의 서쪽지역과 신길동 290의 1호(담)를 기점으로 296의 25호를 연하는 도신로(25m) 중심선의 북쪽지역을 영등포구 도림동에 편입하고, 영등포구 도림동 46의 1을 기점으로 80의 1호(담)를 연하는 도신로(25m) 중심선의 남쪽지역을 영등포구 신길동에 편입한다.</p> <p>15. 영등포구 신길동중 구로구획정리지구 134부러를 기점으로 서쪽으로</p> |
|---|---|

- 130브럭을 연결하는 도신로의 북쪽지역을 영등포구 도림동에 편입한다.
16. 영등포구 도림동 구로 구획정리 지구 133브럭중 도신로(25m)중 십선의 남쪽지역을 영등포구 신길동에 편입하고, 영등포구 도림동 261의 6호(천)와 256의 8호(천)을 연하는 도림천 제방 서쪽지역을 영등포구 대림동에 편입한다.
17. 강남구 학동을 폐지한다.
18. 강동구 암사동 산 42번지의 7호 앞 도로(고덕동길 북쪽 전장 도로 15-25m) 이동지역을 암사동에서 분할하여 이를 고덕동에 편입한다.
19. 강동구 고덕 토지구획정리지구중 고덕동길 서단으로부터 동단끝까지 연하는 이북지역을 하일동에서 분할하여 이를 고덕동에 편입한다.
20. 강동구 고덕 토지구획정리 지구 중 고덕동길 서단으로부터 동단끝까지 연하는 이북지역을 상일동에서 분할하여 이를 고덕동에 편입한다.
21. 강동구 고덕 토지구획정리 지구 중 고덕동길 서단으로부터 동단끝까지 연하는 이북지역을 명일동에서 분할하여 이를 고덕동에 편입한다.
22. 강동구 고덕 토지구획정리 지구 중 고덕동길 서단으로부터 동단끝까지 연하는 이남지역을 고덕동에서 분할하여 상일동에 편입한다.
23. 강동구 고덕 토지구획정리 지구 중 명일동 산 39번지에서 명일동 167번지에 이르는 25m도로 이동지역을 명일동에서 분할하여 상일동에 편입한다.
24. 강동구 성내동중 강동대로(70m) 이남지역을 성내동에서 분할하여 방이동에 편입한다.
25. 영파여고에서 성내동 327번지의 2호에 이르는 풍납로 이서지역을 성내동에서 분할하여 이를 풍납동에 편입한다.
26. 강동구 성내동 73번지의 1호에서 동 101번지의 7호에 이르는 풍납로 이서지역을 성내동에서 분할하여 이를 풍납동에 편입한다.
27. 강동대로 사거리에서 성내교에 연하는 40m 도로 이동지역을 풍납동에서 분할하여 이를 방이동에 편입한다.
28. 강동구 둔촌동중 강동대로(70m) 이남지역을 둔촌동에서 분할하여 이를 방이동에 편입한다.
29. 강동구 이동전체를 방이동에 편입한다.
30. 강동구 가락구획정리지구 70m 도로를 경계로 이북지역을 오금동에서 분할하여 방이동에 편입한다.
31. 방이동중 오금로(35m) 이남지역과 남부순환도로(50m) 이서지역을 방이동에서 분할하여 이를 송파동에 편입한다.

- 32. 남부순환도로(50m)와 오금로(35m) 도로 이동북지역을 방이동에서 분할하여 이를 오금동에 편입한다.
- 33. 남부순환도로(50m)와 오금로(35m) 도로 이동남지역을 방이동에서 분할하여 이를 가락동에 편입한다.
- 34. 강동구 가락동중 오금로(35m) 도로이북지역을 가락동에서 분할하여 이를 오금동에 편입한다.
- 35. 강동구 오금동중(35m) 이남지역을 오금동에서 분할하여 이를 가락동에 편입한다.
- 36. 강동구 오금동 155번지에서 344번지의 3호에 이르는 60m 도로를 경계로 이동지역을 오금동에서 분할하여 마천동에 편입한다.
- 37. 강동구 오금동 155번지에서 344번지의 3호에 이르는 60m 도로를 경계로 이서지역을 마천동에서 분할하여 오금동에 편입한다.
- 38. 강동구 오금동 155번지에서 344번지의 3호에 이르는 60m 도로를 경계로 이서지역을 거여동에서 분할하여 오금동에 편입한다.
- 39. 강동구 가락동중 송파로(50m) 이동북지역과 남부 순환도로(50m) 이북서지역을 가락동에서 분할하여 이를 송파동에 편입한다.
- 40. 강동구 오금로(35m)와 삼환아파트에서 태평양아파트에 이르는(10-60m) 도로 이남서지역을 거여동에서 분할하여 이를 가락동에 편입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 8. 8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㉔

◎서울특별시조례제 2017 호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에 제 10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서울특별시립 영보자애원

가. 무의무탁 부랑부녀자의 장기 수용 보호

나. 수용자에 대한 건강관리

부 칙

이 조례는 1985. 8. 1 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 8. 8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㉔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 2018 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1. 세 증명, 확인발급사항 (61종)

단위 : 원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가. 인감 및 병적에 관한 사항			
1) 인감증명	1 건	250	
2) 병적증명	"	100	
나. 재산 및 지상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	"	330	
2) 시세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	"	330	
3) 재산세 과세증명	"	330	
4)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330	
5) 건축물 관리대장 무한증명	"	330	
6) 자산에 관한 증명	"	330	
7) 자산 및 과산관리인에 관한 증명	"	330	
8)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 (환지예정지 및 확정지적도등을 포함한다)	1 매	330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검사증명	1 건	330	
2) 철거사실증명	"	330	
3) 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	330	
4) 무허가 건물 확인원	"	330	

종 목	단 가	수수료액	비 고
라. 마약에 관한 사항			
(1) 마약재고량 증명	1 건	330	
(2)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	매	60	
마.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증명	매	330	
(2) 생산실적증명	"	330	
(3) 매장, 화장에 관한 증명	"	330	
(4) 실수요자 증명	"	330	
(5)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	"	330	
(6) 원자재(시설재) 증명	"	330	
(7) 식품환경 영업허가(휴, 폐업) 사실증명	"	330	
(8) 공업용 요소 및 실수요자 증명	"	330	
(9) 의료기관 약국(휴, 폐업) 사실증명	1 건	550	
(10) 화재증명	"	550	
(11) 소방시설 증명	"	500	
(12) 수출용 원자재 소요량 증명	"	1,500	
바.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변경 증명	1 건	330	
(2) 신원증명	"	330	
(3) 무적증명	"	330	
(4) 계좌 기재사실증명	"	330	
(5) 거주에 관한 증명	"	330	
(6) 부양사실증명	"	330	
(7) 외국인 등록표 교부(재교부) 신청	"	330	
(8) 운전경력증명	"	330	
(9) 국제결혼증명	"	3,300	
자.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 필지	330	
(2) 체비지 분양신청	"	330	
(3) 종전토지 분할신청	"	330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4) 토지대금, 완납증명	1 건	330	
(5) 도시계획법 제 87 조 증명	"	330	
(6) 환지에정지 문환신청	1 필지	330	
(7) 도시계획확인원	"	730	
(8) 지적공부상 미등재증명	1 건	330	
(9) 지적공부 정리완료증명	"	330	
(10) 환지증명 또는 환지에정지 증명	1 필지	440	
(11) 경계명시측량 (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	5,500	
아. 회계관계증명			
(1) 물품납품 실적 증명	1 건	330	
(2)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증	"	330	
(3)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	"	330	
(4) 물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	330	
(5) 보상금 지불증명	"	330	
(6) 면세용도 물품증명	"	330	
자. 자동차에 관한 증명			
(1) 자동차 말소사실증명	1 건	550	
(2) 자동차 재증명	"	1,000	
(3) 자동차 보관장소 확인원	"	330	
차. 기타 재증명			
(1)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	1 건	330	
(2) 운전자 채용대상자 사고기록 확인	"	330	
(3) 기타 사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	330	
카. 공부열람			
(1) 각종 공부열람	1 시간	100	(초과료 10분 당 100원)

2. 각종 인, 허가 및 신고등 사항 (33 종)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가. 인, 허가에 관한 사항				
(1)	행정서사업허가증 교부	1 건	550	
(2)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	550	
(3)	도로 하천부지 점용 (지하도, 지하상가, 로상주차장 기타) 허가	"	550	
(4)	아취 및 육교사용허가	"	550	
(5)	공유수면 점용허가	"	550	
(6)	권리변경 (재개발지구) 행위허가신청	"	550	
(7)	숙박 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	"	550	
(8)	식품환경 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	"	550	
(9)	공중목욕탕 영업허가증 재교부	"	550	
(10)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신청	"	550	
(11)	토지형질변경 (택지조성) 행위허가신청	"	2,000	
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1)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고	1 건	550	
(2)	이, 미용업 개설신고증 재교부	"	550	
(3)	이, 미용업소명칭 (주소) 변경신고	"	330	
(4)	지유재산대부 (계약대부) 신청	"	550	
(5)	지유재산 매수신청	"	550	
(6)	사설시장 개설 및 경신신청	"	550	
(7)	채비지 명의변경신청서	"	550	
(8)	토지사용 (채비지) 승락서	"	550	
(9)	채비지확인서 (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	550	
(10)	채비지 소유자 확인원	"	500	
(11)	시영주택 (택지) 양도, 양수, 소유권 이전해지 승인신청	"	550	
(12)	시영주택 (증, 개축) 승인신청	"	550	
(13)	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	"	550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14) 이륜소형차 사용신고 및 이전신고	1 건	550	
(15) 인감 (신규, 변경, 개인) 신고	"	220	
(16) 인장업신고	"	1,000	
(17) 입찰참가신청	"	550	
(18) 급수공사신청	"	550	
(19) 식품영업신고	"	2,000	
(20)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550	
(21) 숙박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	"	550	
다. 기타사항			
(1) 우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 인이하의 배	1 척당	1,0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 인이상 10 인이하의 배	"	1,4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 인이상 20 인이하의 배	"	2,100	
(라) 정원 21 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2,800	
3. 광고류 허가 및 신고사항 (14 중)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가. 허가에 관한 사항			
(1) 입간판 설치허가	1 개당	2,000 (1,000)	() 내는 허가갱신 수수료
(2) 현수막 설치허가	"	5,000 (3,000)	
(3) 프랑카드 설치허가	"	5,000 (3,000)	
(4) 애드발룬 설치허가	"	5,000 (3,000)	
(5) 돌출광고물 설치허가	"	20,000 (10,000)	
			길이 2m 이상 또는 소명 및 전기장치 부착분은 2배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6) 공연광고물 설치허가(허가기준일)			
(가) 1-7일	1개당	3,000	
(나) 8-15일	"	5,000 (2,500)	
(다) 16-30일	"	10,000 (5,000)	
(라) 31일이상	"	20,000 (10,000)	
(7) 전주, 가로등주 이용광고물 설치허가	100개당	10,000 (5,000)	가. 100개미만은 100개로 간주 나. 매 100매초과 수량은 50에서 사사오입 1개월이내는 5분 의 1
(8) 차량이용광고물 설치허가	"	20,000 (10,000)	
(9) 지하도 광고물 설치허가	1개당	10,000 (5,000)	
(10) 전단공중 살포허가	1 회	20,000	
(11) 옥상광고물 갱신허가	1개당	50,000	
(12) 공공시설 이용광고허가	100개당	10,000 (5,000)	
나. 신고에 관한 사항			1) 내는 신고갱신 수수료
(1) 벽보지류 설치신고	100매당	10,000 (5,000)	가. 50매이하 공연 광고, 체육관계광 고등은 2분의1
(2) 전단신고	1 회	5,000	나. 비영리적인 것은 제외(면제) 비영리적인 것은 제외 1/2

4. 울림피 광고물 인, 허가 사항 (5'종)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1)	시내버스의외부광고 (측면 및 후면)	1 대 당	3,000 (1,500)	()는 갱신 수수료 허가수수료시효 : 1년 (기간내 광고내용 변경시에는 수수료 면제)
(2)	택시표시등 광고	10 대 당	5,000 (2,500)	
(3)	환경정화용 대형광고	.1 개 당	25,000 (12,500)	
(4)	탑광고	"	20,000 (10,000)	
(5)	전광판 광고	"	60,000 (30,000)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제 534 호

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지 적 승 인 고 시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 항에 의
거 변경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 12
조 4 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6 조의 규

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건설부고시 제 332 호 ('85.7.26) 로
결정고사된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
비)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제 1 항에 의하여 지적승인 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8. 8

서울특별시 장

○ 시설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m)	비고
변경	시장	용산구한강로 2가 16-1 일대	17,050-0	폐지
"	"	용산구한강로 3가, 원효로 3가 신계동 일부지역	45,713-0	"
"	"	용산구한강로 3가 15-3	22,555-0	"
"	도로	용산구한강로 3가 5-3 - 한강로 3가 16-27	B = 15 m L = 506 m - 0	"
○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m)	비고
신설	유통업무 설비	용산구한강로 2가 15번지 일대	135,763	
	도매시장 (판매시설)		(55,963)	
	화물적하장 및 정류장		(6,000)	
	서비스, 판매, 부대시설		(25,232)	
	창고 및 판매시설		(3,100)	
	주차장		(36,262)	
	녹지, 주차장	(9,206)		
○ 결정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p>◎서울특별시고시 제 535 호</p> <p>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11 호 ('85. 6.27)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동법 시행령 제 9 조 및</p>		<p>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5. 8. 8. 서울특별시장</p>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연 장	기 점	중 점	비 고
기정	소로	3	1	6 m	220 m	신길동 4522	신길동 4571-1	일부용도폐지
변경	소로	3	1	6-8 m	157.5 m	"	종로 2-134-1	일부신설변경

나. 지적승인 도면 : 별첨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536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 8. 8.

서울특별시장

다음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2. 사업주체 : 코끼리 주택건설 주식회사 박경중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내역
 - 가. 위치 : 강동구 명일동 산 5번지
 - 나. 대지면적 : 2,898 m²
 - 다. 용도 : 연립주택
 - 라. 규모 : 3층 3동 42세대
3,358.03
 - 마. 도시계획도로개설 : B = 6미터
L = 46미터 약 276 m²
 - 바. 사업비 : 1,639,110 천원

4. 사업시행기간 : '85.8-'85.12.31
- 첨부 : 1) 사업계획 도서 및 설계도서 1부.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461 호

도시계획시설 (시설및변경)

1. 강남구 도시계획 입안 도시계획시설 (신설 및 변경)을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 16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14 조의 2 규정에 의거 공고하여 14 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
2. 본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관계 도서는 아래장소에 비치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 가. 공람장소 -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 나. 공람기간 - '85.8.9-'85.8.27

1985. 8. 8.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입안						
1.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변경(폐지) 및 결정(신설)						
구분	시설명	규모		시점	종점	비고
		현행	변경			
일부변경 (확장)	도시계획시설 (도로)	B=6m	B=8m	논현동 96-1	논현동 96-12	2m 확장
		L=80m	L=80m			
일부변경 (폐지)	"	B=6m	B=10m	논현동 99	논현동 99-19	4m 확장
		L=65m	L=65m			
		폭원	연장	논현동 96-1	논현동 105	
		B=6m	L=56m			
2.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폐지)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폐지	도시계획시설(시장)	강남구 방배동 940-4		1,648.90㎡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구분	시설명	규모		시점	종점	비고
		폭	연장			
신설	도시계획시설 (도로)	20m	150m	강남구 방배동 2100	방배동 2267	
4.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신설)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도시계획시설(시장)	강남구 반포동 1141-1 필지		5,871.6㎡		
5. 도시계획시설(공공용지) 결정(신설)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계	도시계획시설(공공용지)			56,022		
신설	"	세곡동 142-2		756	목욕탕	
"	"	세곡동 7-3 외 6 필지		15,381	세일콘크리트	
"	"	19-1 외 2 필지		4,741	콘크리트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세곡동 50-1 외 3 필지	30,597	동림상유
"	"	9-1 외 1 필지	3,022	삼성공업사
"	"	21-1 외 2 필지	1,525	태진프라스틱

◎서울특별시공고제 462 호

비료생산품목추가허가사함공고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 품목추가 허가하고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5. 8. 8.

서울특별시장

1. 허가번호 : 제 1 - 2 호
2. 허가년월일 : 1985.8.8
3. 성명 : 손 영 희
4. 주소 : 서울 강남구 반포동 1245
반포아파트 95-107 호
5. 사업장 소재지 : 서울 강서구 가양동 92
6. 상호 : 제일제당(주)
7. 상 표

제일제당	유기복합비료	12 호
제일제당	유기복합비료	13 호
제일제당	유기복합비료	14 호
제일제당	유기복합비료	15 호
제일제당	유기복합비료	16 호

8. 비료의 종류 및 품목 : 별첨
9. 보증성분 및 기타의 규격 : 별첨
10. 생산능력 : 별첨

◎서울특별시공고제 463 호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
인가를위한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469 호('84.11.17) 구역결정되고 같은 고시 제 325 호('85.7.22)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518 호('85.7.31)로 사업계획 결정된 구로 제 2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동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들로 부터 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인가하고자 공람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주택과와 당해조합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안에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1985. 8. 8.

서울특별시장

<p>가. 공고내용</p> <p>1) 사업의 명칭 :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p> <p>2)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로 제2구역 재개발조합 ○ 구로구 구로6동 119-7 <p>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로구 구로6동 73-15번지 	<p>의 79 필지 (10,167 평방미터)</p> <p>4) 사업시행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15층 1동 118 가구 ○ 판매시설 (상가) 및 부대복리 시설 <p>나. 공람공고 기간</p> <p>1985.8.10 - '85.9.9</p>
---	--

사 령

◎ 1985년 8월 8일자

령계 289 호

성 명	발 령 사 함	현 부 서	직 급
이 상 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청 소 과	지방화공기사보

서울특별시장